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안 제16조제10항), 이축대지의 이력관리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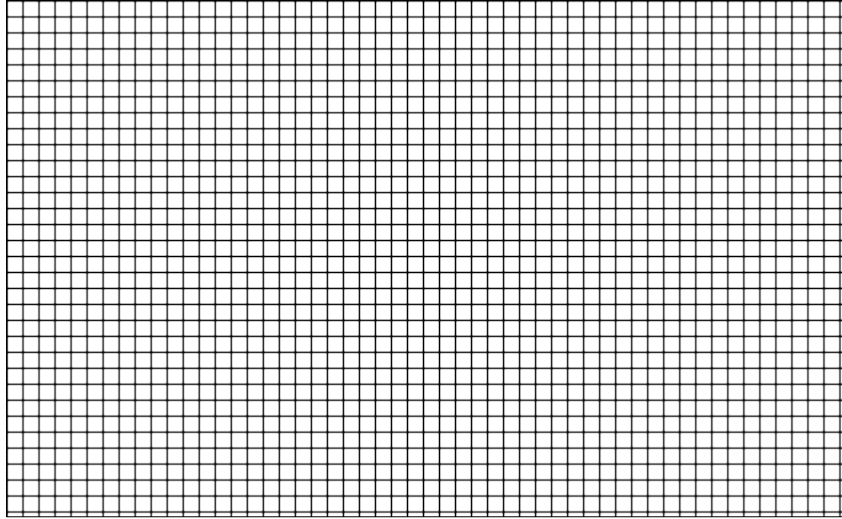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8.7>

(1쪽)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1. 건축물 현황: 건축시기(☐ 구역 지정 이전 ☐ 구역 지정 이후)											① 관리번호			
② 위치											③ 작성일자			
건축물 현황	④ 대지면적				⑤ 주용도				⑥ 작성 사유					
	⑦ 건축면적				⑧ 구조				⑨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소유자	⑩ 주소				⑪ 성명				⑫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 소유자 변동 현황														
⑬ 양도·양수일자	⑭ 주소	⑮ 양수자 성명	⑯ 확인자	⑰ 양도·양수일자	⑱ 주소	⑲ 양수자 성명	⑳ 확인자							
3. 건축물의 동별 현황과 구조물 및 대지의 현황														
동별 현황	⑲ 동별 번호	⑲ 용도	⑳ 구조	㉑ 규모(㎡)						㉒ 허가 (신고)일	㉓ 허가 (신고)번호	㉔ 준공일자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상	소계					
구조물 현황	㉕ 동별 번호	㉖ 용도 (시설물)	㉗ 구조	㉘ 면적	㉙ 높이	㉚ 허가 (신고)일	㉛ 허가 (신고)번호	㉜ 준공 일자	대지 현황 (㎡)	㉝ 토지 면적	㉞ 대지	㉟ 형질 변경	㊱ 농지 전용	㊲ 기타
4. 허가(신고)사항														
㊳ 행위구분	㊴ 구조	㊵ 규모(㎡)	㊶ 용도	㊷ 허가 (신고)일	㊸ 허가 (신고)번호	㊹ 준공일자	㊺ 작성자(인) (소속, 직위, 성명)			㊻ 확인자(인) (소속, 직위,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㉔ 배치도 현황



㉕ 사진 현황

작성 요령

- ①란에는 읍·면·동별 단위로 일련번호(시·군·구 자체관리번호)를 적는다.
- ③란에는 최초 건축물관리대장의 작성일자를 적는다.
- ⑤ 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른 물류창고인 경우 훼손지정비사업 등 사유를 함께 적는다.
- ⑥란에는 재정비·신축(훼손지정비사업 여부)·이축·정정 등의 사유를 적는다.
- ⑨, ④⑧란에는 시·군(구청) 담당 계장의 직위·성명을 적고 날인한다.
- ⑫, ④⑨란에는 시·군(구청) 과장의 직위·성명을 적고 날인한다.
- ⑮, ⑤②란에는 시·군(구청) 과장의 직위·성명을 적고 날인한다.
- ⑳, ⑤⑧란에는 동별 일련번호를 적는다.
- ㉒, ④④란에는 주택, 창고, 축사 등을 적는다.
- ㉓, ⑤③란에는 벽돌, 슬레이트, 목조 등을 적는다.
- ㉕, ⑤③, ④⑤란에는 허가(신고)일자 및 공문번호를 적는다.
- ㉖, ⑤④, ④⑥란에는 허가(신고)번호를 적는다.
- ㉗, ⑤⑤, ④⑦란에는 준공일자 및 공문번호를 적는다.
- ㉙란에는 용도 또는 시설명을 적는다. 이 경우 공장의 용도를 적고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업종 및 건축물에 대한 세부 용도를 적어야 한다.
- ④①란에는 신축, 증축, 재축, 용도변경 등을 구분하여 적는다.(해당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 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을 함께 적는다)
- ⑤②란에는 동별로 빠짐 없이 작성하되, 건축물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한다.
- ⑤①란에는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전체의 현황 사진 및 각 동별 사진을 첨부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인으로 간인(間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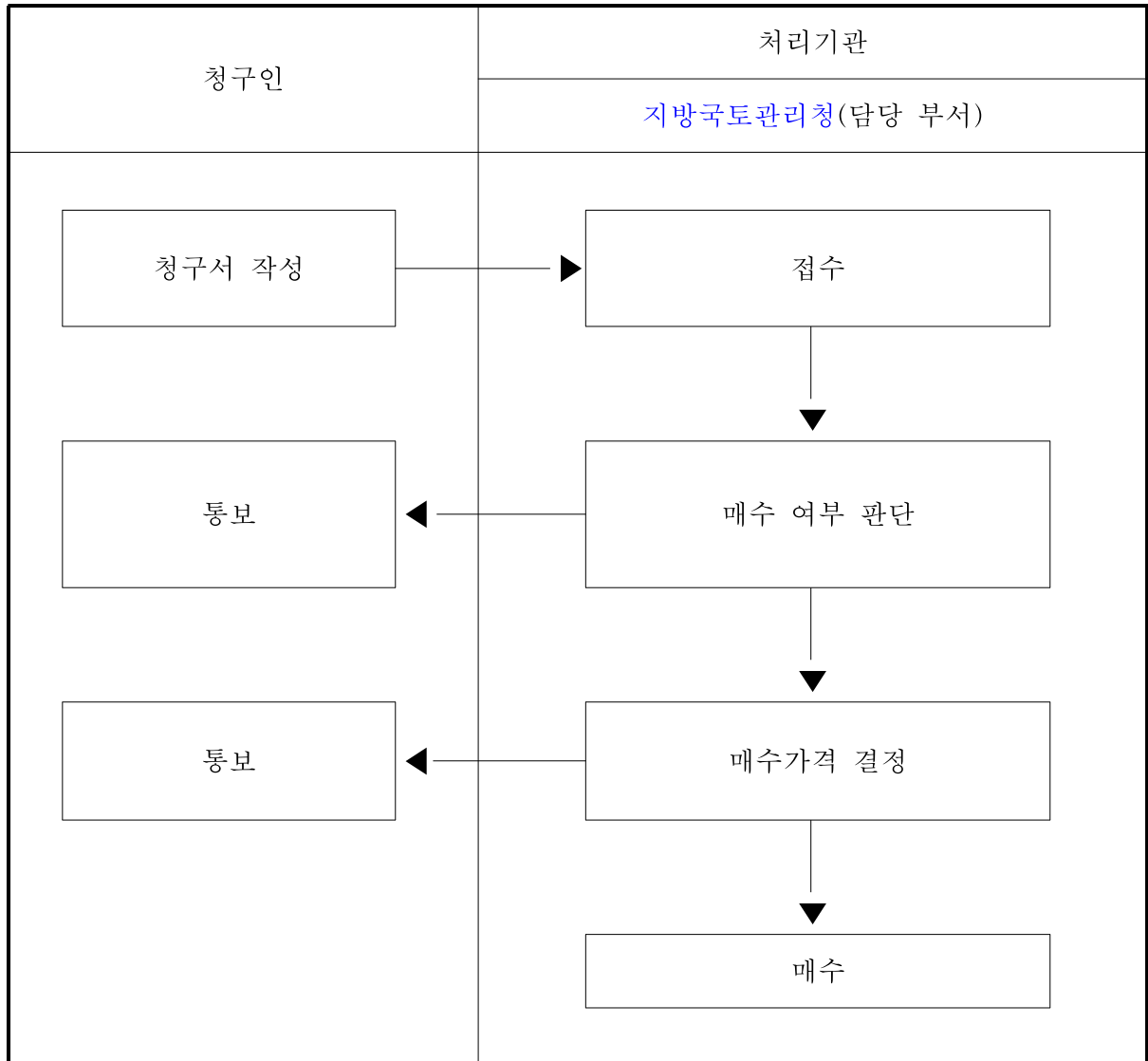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30.>

토지매수청구서		처리기간	*접수	년	월	일
		3년		접수번호	제	호
매수청구인 (토지소유자)	① 성명 (법인의 명칭)			②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의 표시 및 이용 현황						
④ 번호	⑤ 소재지	⑥ 지번	⑦ 지목	⑧ 면적(㎡)	⑨ 이용 현황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⑩ 번호	⑪ 권리의 종류	⑫ 권리의 내용		⑬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매수청구 사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u>지방국토관리청장</u>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청구인(대표자) 제출 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6 –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30.>

(제1쪽)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지방국토관리청 보관용)				
관리번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평가대상 토지	소재지		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	
납부고지금액	금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납부자 보관용)

관리번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평가대상 토지	소재지		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m ²)	
납부고지금액	금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 첨부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 위 고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u>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u>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①----- ----- <u>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u> ----- ----- ----- <u>지방국토관리청장</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